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544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4. 7. 9.

발의자 : 민형배 · 윤준병 · 이재관
김태년 · 박홍근 · 김원이
이수진 · 황정아 · 이기현
이성윤 · 소병훈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현행법은 공공 개방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. 공동주택,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, 이중주차, 무단주차 후 연락 두절 등은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.

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,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,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했습니다.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재물손괴 심지어 상해 · 살인으로 이어집니다. 이제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거나,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.

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,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 해당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,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에 따

라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.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19조의3).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998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”를 “제3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의2제2항에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에”를 “제4항에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1. 부설주차장의 진출입로 등 지정된 주차구역 외의 곳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

2. 인접한 주차단위구획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

3. 외부차량이 무단주차한 후 연락두절된 채 입주민 등의 차량주차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4. 그 밖에 주차질서 준수사항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③ 제2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법률 제1998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</p> <p>제19조의3(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) ① (생략) <u>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.</u></p> | <p>법률 제1998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</p> <p>제19조의3(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부설주차장의 진출입로 등 지정된 주차구역 외의 곳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</u></p> <p>2. <u>인접한 주차단위구획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</u></p> <p>3. <u>외부차량이 무단주차한 후 연락두절된 채 입주민 등의 차량주차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</u></p> |

〈신 설〉

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
2.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
3.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

4. 그 밖에 주차질서 준수사항

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③ 제2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
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
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
는 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
장에게 제8조의2제2항에 따른
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

-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의2제2항에 -----

〈작제〉

〈작제〉

<작제>

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
하는 경우

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.

<신 설>

⑤ 제4항에-----

-----.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
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의 관
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
용한다.